
부패방지 CP 문서관리 운영지침

제 · 개정 일자 : 2025. 12. 1.

제 · 개정 번호 : 00

2025. 12. 1. 제정

남양유업 주식회사

CP 문서관리 운영지침

[시행 2026.1.1.] [부패방지 CP운영지침 제4호 2025.12.1. 제정]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부패방지 CP 운영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을 통해 효과적인 부패방지 CP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부패방지 CP 운영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의 제정, 개정 및 폐기의 절차와 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

1. 문서화된 정보란 부패방지 CP 운영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, 전자파일, 사진, 동영상, 음성, 메신저, 메일 기록 등을 말한다.

제4조 (문서의 작성 및 갱신) 문서화된 정보를 작성하거나 갱신할 경우,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함을 보장하여야 한다.

1. 식별 및 내용(예 : 제목, 날짜, 작성자 또는 문서번호)
2. 형식(예 : 언어, 소프트웨어 버전, 그래픽) 및 매체
3. 적절성 및 충족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승인

제5조 (문서화된 정보의 관리)

① 이 지침에서 요구되는 문서화된 정보는,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.

1. 필요한 장소 및 시기에 사용 가능하고 사용하기에 적절함
2. 충분하게 보호됨 (예 : 기밀유지 실패, 부적절한 사용 또는 완전성 훼손으로부터)

②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를 위해 회사는 다음의 활동 중 적용되는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.

1. 배포, 접근, 검색 및 사용

2. 가독성 보존을 포함한 보관 및 보존
3. 변경 관리 (예 : 버전 관리)
4. 보유 및 폐기

③ 문서화된 정보의 접근 및 열람은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.

1. 부패방지 CP 기록물은 업무상 필요 목적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.
2.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제보 조사 관련 자료는 CP 책임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3. 외부기관 요청 시 제공기록은 별도 목록으로 관리한다.

제6조 (관리대상 문서화된 정보) 회사가 유지 관리해야 할 문서화된 정보는 다음 <표1>과 같으며, 필요 시 부패방지 CP 책임자가 판단하여 추가할 수 있다.

<표1. > 관리대상 문서화된 정보

구 분	관리대상 문서화된 정보	관련 부서
리더십	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 및 서신문, 부패방지 방침, 부패방지 행위규범	CP 전담조직
조직	부패방지 CP 책임자의 임면 문서	인사팀
규정	부패방지 CP 규정 및 운영지침	CP 전담조직
운영	CP 운영계획	CP 전담조직
부패위험 평가	리스크 평가서	CP 전담조직, 각 부서
공급망 관리	관련 자료	브랜드팀
신고	신고서, 조사보고서, 조치결과서	감사팀, CP 전담조직
교육	교육 계획 및 결과 보고서	CP 전담조직, 인사팀
소통	준법지원실천담당자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	CP 전담조직
모니터링	효과성평가 결과 보고서	CP 전담조직
조치 및 개선	제재 조치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자료	감사팀, CP 전담조직, 인사팀
공개	전자공시 자료	CP 전담조직
회의 심의	컴플라이언스위원회 회의록	CP 전담조직
외부 인증기록	ISO37001, 국민권익위원회 윤리경영 CP	CP 전담조직

제7조 (문서화된 정보의 보존)

- ① 부패방지 CP의 운영과정에서 생성된 문서화된 정보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3년간 보존하는 것으로 하며, 이후에는 각 부서장의 판단하에 추가 보존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.
- ② 부패방지 CP 책임자는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문서화된 정보의 경우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1항의 보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문서화된 정보는 다음의 방법으로 보존한다.
 - 1. 전자문서 형태를 원칙으로 하되, 원본 서류는 스캔 후 전자 파일화하여 보관한다.
 - 2. 비밀등급 또는 개인정보 포함 기록물은 암호화 및 접근권한을 제한한다.
 - 3. 보존기간 이전에 문서의 삭제 또는 폐기는 전담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문서화된 정보의 폐기)

- ① 문서화된 정보는 이 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폐기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지침은 2026. 1. 1.부터 시행한다.